[헌장 및 정관(규정)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형 / 목회데이터연구소 여론조사 항목(참고용)

아래 항목은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핸드폰 문자로 여론조사를 시행할 시, 조사할 항목입니다. 여론조사는 11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조사 항목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자료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헌장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사용됩니다.

문자 응답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교직자들에게 문자 발송 → ②휴대폰으로 문자가 수신되면 각자가 링크 클릭 → ③안내에 따라 개인 의견 제시 → ④목회데이터연구소의 결과 취합 및 분석 → ⑤헌장개정위원회에서 결과 검토 후 반영 순입니다.

1. 응답자의 직분은?

①담임목사 ②시무장로 ③원로목사 ④원로장로

2. 응답자의 연령은?

①80세 이상 ②70대 ③60대 ④50대 ⑤40대 ⑥30대

3. 응답자가 소속된 지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는 각 시 인근의 권역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강원도 ②경기도 ③경상도 ④서울시 ⑤전라도 ⑥제주도 ⑦충청도 ⑧해외

【주요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4. 원로목사와 원로장로의 총회대의원권 제도에 대한 의견은?

【현행 헌장조항】

제92조 총회 조직방법

② 『총회』는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를 예우하여 『**총회대의원권』을 부여**하되 각각 동수로 지방회가 선정한다.

①현행 제도 유지 ②원로목사와 원로장로의 총회대의원권 인원으로 제한

③원로목사와 원로장로의 총회대의원권 연령으로 제한

④원로목사와 원로장로의 총회대의원권 삭제

⑤기타의견

5. 대의원 파송 인원에 대한 의견은?

【현행 헌장조항】 제78조 ④항 및 제92조 ①항

①현행 제도 유지 ②대의원 파송 인원 확대 ③대의원 파송 인원 축소 ④기타의견

6. 교직자(목사 및 장로)와 일반직원(권사, 안수집사, 집사)의 시무정년에 대한 의견은?

【현행 헌장조항】 제50조 장로 ⑤ 장립과 정년 5. 장로의 시무정년은 나이 **만 70세**로 하며, 정년이 되면 『본 교회』의 모든 공직이 자동 정지된다. 제53조 목사 ⑨ 목사의 시무정년과 은급 1. 목사의 시무정년은 나이 **만 70세**로 하며, 정년이 되면 『본 교회』의 모든 공직이 자동 정지된다. ※ 교직자(목사 및 장로)의 시무정년에 대한 조항이 개정될 경우에는 일반직원의 시무정년도 개정됩니다(권사 제49조 ⑤항, 안수집사 제48조 ⑤항, 집사 제47조 ⑤항).

①현행 제도 유지 ②시무정년 나이 만 75세로 개정 ③기타의견

7. 총회 임원선거 제도에 대한 의견은?

【현행 헌장조항】 총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9조 선거 ① 각 임원선거는 기표소를 설치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①현행 제도 유지 ②현행 제도 개선 ③기타의견

8. 총회 임원 중 총무 제도에 대한 의견은?

【현행 헌장조항】 제95조 총회 임원선거 및 임기 ① 임원 3. **총무 1명** (목사, 장로) ④ 임원 임기 다음 번 총회에서 임원이 개선될 때까지이며, 총회장의 중임은 1회에 한한다(단, **총무의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①현행 제도 유지 ②실무형 사무총장 제도로 개정(총회 임원 제외) ③기타의견

9. **산하기관 기관장(이사장)의 임기에 대한 의견은?**

> **【현행 헌장조항】**
> 제94조 ⑩항 4호 가목 :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장의 임기
> 제94조 ⑪항 3호 가목 : 성결교신대원, 총회성결교신학교 이사장의 임기
> 제94조 ⑬항 3호 가목 : 재단법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이사장의 임기
> 제94조 ⑭항 3호 가목 : 재단법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은급재단 이사장의 임기
> ※ 상기 산하기관 기관장(이사장)의 임기 : **4년 단임**

①현행 제도 유지 ②2년 중임제 ③기타의견

10. **목사안수 자격에 대한 의견은?**

> **【현행 헌장조항】**
> 제53조 목사
> ③ 자격 중 1,2,3호 등 : 시무경력 세분화
> ※ 시무경력을 일괄 개정함으로 목사안수의 자격 완화

①현행 제도 유지 ②『지 교회』의 전임전도사 시무경력 완화 ③기타의견

11. **총회유지비 산출 방법에 대한 의견은?**

> **【현행 헌장조항】**
> 제70조 직무와 권한 및 의무
> ③ 의무
> 5. 제94조 ④항에 따라 『총회유지비』를 납부해야 한다(단, 『총회유지비』는 매년 「교세통계자료 보고서」에 기재하여 『지방회』와 『총회』에 보고하는 **경상비 결산액의 100분 1**을 근거로 산출하여 납부한다.).

①현행 제도 유지(경상비 결산액을 근거로 산출하여 책정)
②『지 교회』 세례교인 기준으로 산출하여 책정
③기타의견

12. **법인명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을 "학교법인 성결대학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①찬성 ②반대 ③기타의견

13. **헌장 및 정관(규정), 행정서식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간단히 적어주십시오.**